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9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20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2025년 5월 15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」 시행에 맞춰 조례안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.
- 또한, 사용허가 취소 통보 주체를 명확히 하고, 사용허가 취소 시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허가기간을 부여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허가기간이 ” 3개월 이상” 인 경우에서 “6개월 이상” 으로 하여 장기간 사용허가를 규정한 다른 조문 간 정합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용허가기간을 즉시 종료할 수밖에 없는 경우(전염병 발생, 시설 파손 등)에 대한 예외를 두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목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으로 변경함.
- 사용허가 취소 시 통보 주체를 “학교장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통지를 받을 대상자를 “사용신청자”에서 “사용자”로 함(안 제10조제4항).
- 사용허가 취소 시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허가기간을 부여해야

하는 대상을 사용허가기간이 ” 3개월 이상” 인 경우에서 “6개월 이상” 으로 하고,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즉시 종료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자 함(안 제10조제5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명 “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으로 변경한다.

안 제10조제4항 중 “제1항에”을 “학교장은 제1항에”로, “등의 결정은 사용신청자”를 “등을 결정한 때에 그 사실을 사용자”로 하고, 안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학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즉시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을 종료할 수 없으며, 취소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전염병 발생, 시설 파손 등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즉시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행	조례안	수정안
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~ ③ (생략)	<u>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u> 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취소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허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	<u>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u> 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~ ③ (조례안과 같음)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을 결정한 때에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⑤ 학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즉시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을 종료할 수 없으며, 취소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전염병 발생, 시설 파손 등으로 사용허가 기
<신설>		
<신설>		

현행	조례안	수정안
		<u>간을 즉시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